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0. 30.(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 배포 2026. 10. 30.(금)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

-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휴일보상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복지부는** 어르신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살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을 받거나, **시설**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 이를 위해 ▲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위한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 입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추진한다.

< 과제 1.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월 한도액)**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

구분		1등급	2등급
재가 월한도액	'26년	2,512,900원	2,331,200원
	'27년	**2,891,400원**	**2,682,300원**
인상액		+378,500원	+351,100원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 또한,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 **(방문간호)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 **(재택의료)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 **(재택자립훈련·방문영양)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정기순회·수시대응)**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서비스 제공 예시) ①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②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③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④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 기존 방문요양과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비교 >



○ **(병원동행·낙상예방)**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 ('26) 282개 장기요양기관(통합재가기관 170개소,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 기존 대비 ① 아파트, ②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

○ **(단기돌봄 특례)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과제 2.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

□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 **(한시가산 연장)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 **(원거리 교통비) 또한,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 **(휴일보상)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 종일방문요양 수가 : 177,680원 → 206,030원(28,350원 인상)

□ **(장기근속장려금)**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 2027년 장기근속장려금 예상 지급액 약 3,705억 원(장기요양요원 381,986명)

○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과제 3.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를 강화**한다.

○ **(유니트케어)**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니트케어)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유니트케어 근무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36개 유니트 선정)

○ **(전문요양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전문요양실) 간호인력 추가 배치(입소자 25명당 1명 → 6명당 1명), 계약의사 방문 횟수 강화(월 2회 → 주 1회)

□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2.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하였다.

○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4~'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3조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4조 원 증가

○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득대비 보험료율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0.9448%	0.9994%

□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과 초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소요는 크게 증가하는 한편, 이러한 수요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만 감당하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요양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3. 정부는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체를 운영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담당 부서 <수가> <보험료율> <위원회> <재택의료>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3499)
		담당자	사무관 이하림 (044-202-3498)
		담당자	사무관 유경성 (044-202-3493)
		담당자	사무관 이용희 (044-202-3495)
<시설서비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3545)
		담당자	사무관 정영미 (044-202-3513)

붙임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인포그래픽)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보건복지부



01 01. 집에서의 충분한 돌봄 지원

중증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90% ➡ 100% (시설 대비 비율)

- 1등급 251만원 ➡ 289만원
- 2등급 233만원 ➡ 268만원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등 복합제공

2026년 418개소 ➡ 2027년 700개소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신설

짧은 시간, 여러 차례 돌봄 지원

정기순회 + 수시방문 + 방문간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다각화 서비스 & 거점센터 도입

2026년 463개소 ➡ 2027년 500개소

방문간호 활성화

간호사 방문당 가산 인상

2026년 3,000원 ➡ 2027년 5,000원

재택 자립훈련&방문영양 시범사업

수급자 맞춤형 기능훈련 및 영양상담·관리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어르신의 안전한 병원동행 지원

2026년 282개소 ➡ 2027년 750개소

낙상예방 시범사업 확대

아파트, 임차주택까지 기준완화

2027년 10,000명

단기보호 인프라 확대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단기돌봄** 허용

02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원거리 교통비 인상

·섬·벽지 등 취약지역 교통비 전 구간 30% 인상

휴일 보상 강화

·유급휴일 급여비용 가산 확대
·종일방문요양 주휴수당 반영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동일기관 내 직종 변경 후 복귀 시 근무기간 연계 인정
(1인당 월 1회 지급)

03 시설에서도 맞춤형 돌봄 지원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확대

·1인실 원칙 &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배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간호인력 추가배치 &
계약의사 방문횟수 강화

붙임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7년 한도액	2,891,400	2,682,300	1,586,300	1,462,000	1,254,900	700,200
인상률	15.1%	15.1%	3.8%	3.7%	3.8%	3.5%

<2027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27년 수가	'27년 본인부담
1	**93,070**	18,614	96,380	19,276
2	**86,340**	17,268	89,410	17,882
3,4,5	**81,540**	16,308	84,440	16,888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원)

등급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27년 수가	'27년 본인부담
1	74,590	14,918	77,260	15,452
2	69,210	13,842	71,690	14,338
3,4,5	63,800	12,760	66,080	13,216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41,820	6,273	43,300	6,495
	2	38,720	5,808	40,090	6,014
	3	35,740	5,361	37,000	5,550
	4	34,120	5,118	35,320	5,298
	5	32,490	4,874	33,640	5,046
	인지지원	32,490	4,874	33,640	5,046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6,060	8,409	58,040	8,706
	2	51,930	7,790	53,760	8,064
	3	47,940	7,191	49,630	7,445
	4	46,300	6,945	47,930	7,190
	5	44,650	6,698	46,230	6,935
	인지지원	44,650	6,698	46,230	6,93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9,730	10,460	72,190	10,829
	2	64,590	9,689	66,870	10,031
	3	59,640	8,946	61,750	9,263
	4	58,010	8,702	60,060	9,009
	5	56,360	8,454	58,350	8,753
	인지지원	56,360	8,454	58,350	8,753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6,820	11,523	79,530	11,930
	2	71,160	10,674	73,670	11,051
	3	65,750	9,863	68,070	10,211
	4	64,090	9,614	66,350	9,953
	5	62,460	9,369	64,660	9,699
	인지지원	56,360	8,454	58,350	8,753
13시간 초과	1	82,370	12,356	85,280	12,792
	2	76,310	11,447	79,000	11,850
	3	70,500	10,575	72,990	10,949
	4	68,860	10,329	71,290	10,694
	5	67,240	10,086	69,610	10,442
	인지지원	56,360	8,454	58,350	8,753

④ 단기보호

(단위 : 원)

등급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	74,060	11,109	76,700	11,505
2	68,580	10,287	71,030	10,655
3	63,350	9,503	65,610	9,842
4	61,680	9,252	63,880	9,582
5	60,000	9,000	62,140	9,321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7,450	2,618	18,110	2,717
60분	25,320	3,798	26,280	3,942
90분	34,120	5,118	35,420	5,313
120분	43,430	6,515	45,080	6,762
150분	50,640	7,596	52,560	7,884
180분	57,020	8,553	59,190	8,879
210분	63,530	9,530	65,940	9,891
240분	70,080	10,512	72,740	10,911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92,140	13,821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83,070	12,461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51,870	7,781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2,880	6,432	44,300	6,645
30분~60분 미만	53,770	8,066	55,560	8,334
60분 이상	64,690	9,704	66,840	10,026